

**감리원의 자격기준** (제74조제1항 관련)

등급	자격기준
수석 감리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분야 중 정보기술 중직무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정보시스템 감리와 관련하여 「자격기본법」에 따른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한 사람</li> </ul>
감리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분야 중 정보기술 중직무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6년 이상 정보기술 분야 업무를 수행한 사람</li> <li>■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분야 중 정보기술 중직무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9년 이상 정보기술 분야 업무를 수행한 사람</li> <li>■ 행정안전부장관이 「국가기술자격법」 및 「자격기본법」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감리 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</li> </ul>

※ 비고

1. "정보기술 분야 업무를 수행한 사람"이란 정보기술 관련 분야의 계획·분석·설계·개발·운영·유지·보수·감리 또는 연구 업무(군복무 또는 그에 대체하는 복무를 포함한다)를 수행한 사람을 말하며, 그 경력의 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2. "정보시스템 감리 유사자격"이란 정보시스템 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내외 기술자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말하며, 그 자격의 구체적인 종류 및 인정 방법·절차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